



# 제 안 설 명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 령 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신 상 진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공모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인·구직 매칭 등 일자리·창업 연계사업 특성상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운영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전문성과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및 제7조(승인·동의 및 보고)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대가야읍 시장길 16-1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자리 매칭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위탁업체는 공개공모하고자 하며 신청자격은 취업상담 및 알선, 취·창업지원 운영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과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매칭 등 취업지원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업무의 효율성·연속성·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예산은 군비로, 연간 총 130백만원 정도이며 취·창업 상담이 가능한 전문 컨설턴트 등 운영인원 3명에 대한 기준 인건비 78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52백만원으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인구정책과장    신 상 진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인구정책과장)
연 월 일	2024. . .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제안이유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센터명	소재지	연면적 (운영인원)	운영방법		비고
			현재	운영계획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대가야읍 시장길 16-1	57㎡ (3명)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행기관 운영	민간위탁	

###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매칭,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무 전반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5. 1. 1. ~ 2026. 12. 31.)
- 신청자격(2가지 조건 충족)
  -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취업상담 및 알선, 취·창업지원 운영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원 이상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 주요업무

구 분	위탁내용	비고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li> <li>-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지원</li> <li>-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li> <li>-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채용행사, 취업컨설팅 등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 및 홍보 활동</li> <li>-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지원 사업</li> </ul>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지원</li> <li>-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li> <li>-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지원 사업</li> </ul>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

다. 민간위탁 예산

○ 예산액: 130,000천원(군비)

구 분	예산(천원)	내역	운영인원
합 계	130,000		
인건비	78,000	· 인건비 등	사업단장 1, 팀장 1, 컨설턴트 1
운영비	52,000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나. 필요성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 민간에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고용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일자리·창업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연속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효율성 증대

###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취업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 승인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 5. 참고사항

가.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규 : 붙임 참조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관내 기업 및 군민에게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1. 관련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2. 목적 및 필요성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운영으로 고용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제고

## 3. 민간위탁 대상

센터명	소재지	연면적 (운영인원)	운영방법		비고
			현재	운영계획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대가야읍 시장길 16-1	57㎡ (3명)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행기관 운영	민간위탁	

##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명 :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5. 1. 1. ~ 2026. 12. 31.)
- 수탁자격(2가지 조건 충족)
  -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취업상담 및 알선, 취·창업지원 운영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원 이상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 위탁사무 내용

구 분	위탁내용	비고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li> <li>-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지원</li> <li>-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li> <li>-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채용행사, 취업컨설팅 등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 및 홍보 활동</li> <li>-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지원 사업</li> </ul>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지원</li> <li>-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li> <li>-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지원 사업</li> </ul>	

## 5. 민간위탁 예산

○ 예 산 액: 130,000천원 (2025년도 예산 기준)

○ 지원 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군 비(천원)	내 역	운영인원
합 계	130,000		
인 건 비	78,000	· 인건비 등	사업단장 1, 팀장 1, 컨설턴트 1
운 영 비	52,000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예산액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6. 민간위탁 기대효과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전문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창업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 방지 기여
-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붙임)

## 관 련 법 규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인구정책과	
연 락 처	(054) 950 - 6583